

동물권행동 카라

수신자 00학원
(경유)

제 목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 · 실습 중지 및 생명존중 교육으로의 전환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사)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2002년 시작되어, 동물과의 바람직한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 캠페인에 주력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3. 카라는 2020년 1월 9일, 불임2의 사진과 함께 귀사의 교육 프로그램 중 동물의 사체와 살아있는 동물을 마취 상태로 해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4. 교육부는 '생명존중교육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7년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해부실험을 제외했으며,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제24조2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에 카라는 불임1과 같은 이유에서 귀사의 해부실험 즉시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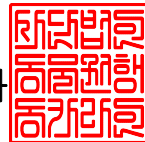
5. 아울러 이후 동물의 생태와 복지를 고려한 생명존중 교육으로의 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본 공문과 귀사의 답변 내용은 카라 홈페이지와 보도 자료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6. 1월 10일(금)까지 귀사의 답변을 아래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info@ekara.org)

불임1.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실습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한 카라의 의견서. 1부.

불임2. 카라에 제보된 00학원 해부특강 모집 안내 문자(1장). 1부. 끝.

(사) 동물권행동 카라



담당 간현임 팀장 간현임 이사 전진경 대표 임순례
시행 카라-2001-다A-04 (2020. 01. 09.) 접수 ()

우 039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457-5) / <https://ekara.org>
전화 02)3482-0999 전송 02)3482-8835 / info@ekara.org / 공개

[붙임1]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실습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한 카라의 의견서

이유 1.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보호법 제23조에서는 동물실험이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될 수 없는 사설학원의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은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기존의 해부실험 없이 '지식과 경험'을 보유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23조2항의 원칙에 따라 실제 해부를 시행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상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23조의 원칙에 따라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년 신설된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형·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유 2. 해외 선진국형 국가들의 동물해부실험에 대한 제도 현황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예: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다수의 선진국형 국가들은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동물복지에 대한 배려 뿐 아니라, 해부실습 등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이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 백해무익하기에 '비교육적'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 스위스 · 노르웨이 · 네덜란드 · 덴마크 : 중고교 동물 해부실험 법으로 금지
- 대만 :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금지
- 인도 : 대학 동물 해부실험 금지, 해부 시뮬레이션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
- 영국 :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을,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 금지
- 미국 : 1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초 · 중 · 고 학생들이 직접적인 동물해부 대신 대체물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

이유 3. 카라의 동물해부실험실습 반대 활동

카라는 지난 2016년 6월 경기도 양평군의 K사교육업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돼지 폐, 붕어, 메추라기 등의 해부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동물 해부실험 제재 요청을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사과공문을 받았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해부실험과 생태계 교란 생물 이용 실험 관련 유의사항 알림에 대한 공문을 발송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1일 '폴리시브릿지'에서 실시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중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공청회'에 참가하여 어린이 · 청소년 동물해부실험 금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공청회에 함께한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실(대표발의 의원실)에서 2017년 3월 15일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당 법안 통과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3월 15일 ~ 4월 5일 수요일까지 약 3주 간 2,7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1차 제출하고, 4월 24일 세계실험동물의 날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19명의 국회의원실 전원에게 약 5주 간의 서명운동 결과인 3천여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2월 28일 관련 법 개정안이 (대안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사체를 포함하여 동물 해부실험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카라에서는 생명존중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2015년부터 대체학습 교구로 개구리 해부모형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교원에듀 빨간펜 센터의 동물해부수업에 대한 제보에 강력히 대응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으로 실질적인 변화 사례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

초중고생 해부실험 대체를 위한 카라의 제안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050>

어린이 · 청소년 동물 해부실험에 대한 제재 요청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525>

어린이·청소년 해부실험은 동물학대이자 아동학대이다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963>

미성년자 해부실험금지 서명 1차 제출 + 무한도전 출연!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8485>

미성년자 해부실험 금지 서명 국회 농해수위 제출!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8575>

[카라x폴리시브릿지]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9727>

동물해부실습 수업, 꼭 그래야만 했나요? :

<https://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1202>

관련 보도 기사

아이들에게 동물실험보다는 동물보호교육을(2015.05.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05061001411

돼지 폐 해부하는 아이들... 공공연한 학교 밖 동물 실습(2016.06.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141

"나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에 반대합니다"(2017.04.19.)

<http://news1.kr/articles/?2971733>

교원 '빨간펜' 동물 해부실습 중단...대체 자재로 변경(2019.03.12.)

<http://news1.kr/articles/?3568782>

4. 최종 의견

- 동물해부실습은 동물보호법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함. 어린이 청소년은 해당사항 없음
- 해외 선진국형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습은 비교육적이며, 이미 대체 가능한 수단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이 입증됨
- 국내 입법기관, 교육기관에서 동물 해부실습의 불필요성을 인정하고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조항 신설)

위와 같은 이유로 카라는 00학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부 실습 및 수업을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명하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후 동물의 생태와 복지를 고려한 생명존중 교육으로의 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생명감수성이 싹트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동물과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자신의 측은지심을 외면하는 태도부터 배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00학원이 우리사회의 진정한 생명존중 교육을 이끄는 모범현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그날까지, 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